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의 안 번 호	907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가.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인하여 기금 수입계획이 변경되고, 스마트 장비를 활용한 어르신 돌봄 시범사업 도입, 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사업 확대 및 변경으로 인하여 기금 지출계획이 변경되어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(노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2023년 수입계획 상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결과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액이 당초 878백만원에서 984백만원으로 106백만원 증가됨

나. 2023년 지출계획 상 정책사업비에서 비융자성 사업(스마트 돌봄을 위한 시범사업) 782백만원, 융자성 사업(어르신 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지원) 230백만원이 증가하였음. 이에 따라 예치금 금액이 1,430백만원에서 524백만원으로 906백만원 감소하였음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- 수입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장/관/항/목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률 (D=C/A)
합 계	1,738,987	1,845,474	106,487	6.1
세외수입	291,442	291,442	-	-
경상적세외수입	16,993	16,993	-	-
이자수입	16,993	16,993	-	-
공공예금이자수입	16,993	16,993	-	-
임시적세외수입	274,449	274,449	-	-
기타수입	274,449	274,449	-	-
그외수입	274,449	274,449	-	-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1,447,545	1,554,032	106,487	7.3
보전수입등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예치금회수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예치금회수	877,641	984,128	106,487	12.1
내부거래	569,904	569,904	-	-
예탁금및예수금	569,904	569,904	-	-
예탁금이자수입	569,904	569,904	-	-

- 지출계획 변경내용

(단위 : 천원, %)

정책/단위/세부/편성목	당 초 (A)	기금운용계획 변경안 (D)	증 감 (E=D-A)	증 감 률 (F=E/A)
합 계	**1,738,987**	**1,845,474**	**106,487**	**6.1**
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	**305,800**	**1,318,800**	**1,013,000**	**331**
어르신의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 지원	40,000	40,000	-	-
어르신 정보화 교육	40,000	40,0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40,000	40,000	-	-
디지털 돌봄 역량 강화 추진	-	300,000	300,000	순증
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(308-11)	-	300,000	300,000	순증
스마트 노인복지관 조성	-	450,000	450,000	순증
민 간 위 탁 사 업 비 (402-03)	-	450,000	450,000	순증
스마트장비 연계 재가어르신 복약·정서 지원	-	33,000	33,000	순증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-	33,000	33,000	순증
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임대자금 융자 및 운영 지원	100,000	330,000	230,000	230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100,000	330,000	230,000	230
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	97,000	97,000	-	-
시설종사자 역량강화	97,000	97,0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97,000	97,000	-	-
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	68,800	68,800	-	-
어르신 주거지원	68,800	68,800	-	-
사 회 복 지 사 업 보 조 (307-11)	68,800	68,800	-	-
재무활동	**1,430,187**	**523,674**	**△906,513**	**△63**
보전지출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여유자금 예치	1,430,187	523,674	△906,513	△63
행정운영경비	**3,000**	**3,000**	**-**	**-**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>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>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> 1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
> 2. 「재해구호법」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사전협의 완료

라. 기　　타 : 2023년 제2차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완료(원안가결)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박부경 (☎2133-7407)